

Japan Non Tariff Barriers Issue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소비자청,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 발표



消費者庁

Consumer Affairs Agency, Government of Japan

일본 소비자청,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 발표

2018년 5월 11일, 일본 소비자청에서 '식품 표기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제 2 판)'이 공표되었음. 해당 지침에는 식품표시 기준의 대상, 표시가 필요한 영양 성분이 소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일본에서 식품표시 기준은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애완동물 식품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식품 표시 기준은 식품 관련사업자등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됨

식품별로는 가공식품 및 첨가물은 용기 포장에 넣어진 제품에 식품표시 기준이 적용됨. 신선식품은 용기 포장에 넣어진 것 이외에도 식품표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양성분 표시는 용기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며, 식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함

식품표시 기준에 규정된 영양 성분

식품표시 기준에 규정된 영양 성분은 다음 장 표와 같음. 그 중 식품표시 기준 제 3조에 규정 된 영양 성분 및 열량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 일반용 가공식품과 일반용 첨가물은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신선식품의 경우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인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

Japan Non Tariff Barriers Issue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영양성분 표시 기준표〉

영양성분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	
		일반용	업무용	일반용	업무용	일반용	업무용
제 3 조에 규정된 영양 성분 및 열량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의무	임의	임의	임의	의무	의무
제 3 조에 규정 없는 영양 성분	포화 지방산, n-3 계 지방산, n-6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류(단당류 또는 이당류이며, 당알콜 없는 것에 한한다), 식이 섬유, 아연, 칼륨, 칼슘, 크롬 셀레늄, 철, 구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요오드, 인, 니코틴산,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K, 엽산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임의

출처:일본 소비자청

각 식품 및 영양 성분별로 표시 의무 여부 확인해야...

일본 수출을 앞둔 국내 업체는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한 영양소 및 식품 용도에 따른 표시 의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출 제품 포장에 적용하도록 함. 하기 URL을 통하여 영양성분 표시 세부 내용 등을 확인 후, 포장을 제작해야 할 것임

▶▶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act_180518_0001.pdf

출처

일본 소비자청, 식품 표기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지침(제 2 판), 18.05